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2. 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박종국

가. 제안이유

「도로법」 전부 개정(2014.1.14, 시행 2014.7.15.)에 따라 상위법령
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
한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
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등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2조의 2)
 -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(안 제4조제1호)
 -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(안 제8조제5항)
 -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 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법」 전부 개정과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,
-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며,
- 안 제8조제5항에서는 그동안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았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,
-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두어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음
-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였고,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,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